

1. 개정이유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의무 삭제,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포기, 영주귀국 제출서류 관련 규정 정비,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관련 내용 변경, 해외이주알선업체 사업장 이전 등 신고시 제출서류 조항 신설,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 등의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종 신고시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의무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 1) 현행법에서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공관에서 G4K 시스템을 통해 해외이주신고를 접수하면 다음날 행정안전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어 해당 조항 삭제함.

나. 미성년자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의무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 1)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 신고시에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여타 여권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해외이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다. 해외이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5조제1항제6호, 안 제5조제1항제7호)

- 1)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배우자 비자” 취득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추가함
- 2)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이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이주를 재신고하려는 경우 영주귀국신고 시 취소를 확인한 해당 영주권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3) 영 제5조에서 외교부령에 위임한 서류 범위에 여권 등 신분증 관련 내용 추가함

라. 해외이주신고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 제5조제2항제5호, 안 제5조제2항제6호, 안 제5조제3항)

-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행정정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 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5조에서 규정한 서류만으로 이주의 종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마. 해외이주알선업 임원 변경시 신고의무 추가(안 제7조제2항제1호)

- 1)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없어서 이를 개정함.

바.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 상한 명시(안 제8조제2항)

- 1) 현행법에는 최소 보험가입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최대 가입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손해 발생시 해외이주알선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사. 해외이주알선업체 보험금 배상 시 재가입 후 등록증 갱신 의무 명시(안 제9조제5항)

- 1)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아. 해외이주포기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2조제1항)

- 1) 해외이주포기서,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여권 등 해외이주포기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자. 영주귀국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3조제1항)

- 1) 각 국의 영주권 포기제도가 상이하여 영주귀국 의사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가 다르고 영주권 분실 등의 경우도 있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차. 사업장 이전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 조항 신설(안 제14조)

- 1) 해외이주알선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규정함.

카.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안 별표 제3호, 제4호)

- 1)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의 시정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함.
- 2) 유사입법례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21.3.24)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23. 9.13 ~ 9. 25.)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3) 행정규제(규제영향분석서 첨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을 “법정대리인(부모 또는)”으로, “동의서”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주대상국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여권 사본(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후 이전 해외이주국가와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이주를 재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영주귀국신고 당시 취소를 확인한 제1호에서 정한 영주권 등 서류를 재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여권 및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2호부터 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1호와 6호의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세납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국세납세증명서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의 해외이주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제8조제2항 중 “이상으”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포기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과 여권(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류를”을 “서류 등과 여권(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 정보 증명서)을”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사업장 이전의 경우)
2. 분사무소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분사무소 설치의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I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I 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 내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여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4.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를 “확인서를 수령하는 기관에서는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입(재가입 포함) 또는 갱신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적용한

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 내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여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4.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5.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3회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가 5회에 이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6.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기준 중 그에 가장 유사한 기준을 준용한다.
7.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외이주할

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주지역	국	시
	이주종류		
	병역관계	병역필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동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병역	신고인과의 관계

초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체류 자격	신고인과의 관계
	현주소		

「해외이주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해외이주 동의서 1부(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이주대상국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여권 사본(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여권(단,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함께 지참)	수수료 6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정보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로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제공요구 서류	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국세납세증명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 는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인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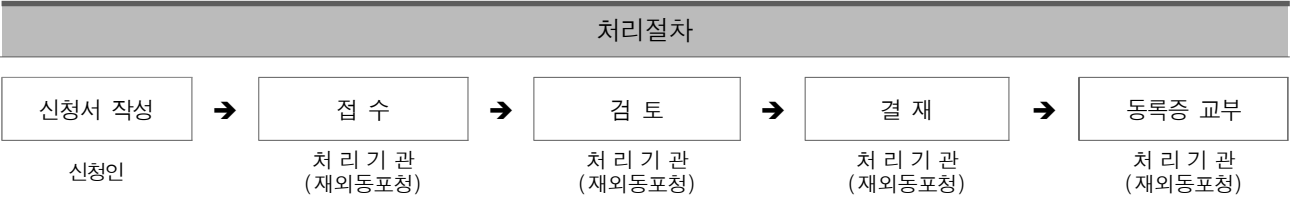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재무상태표 3. 사업계획서 4.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전내용	이전장소			
	이전일	년	월	일
	이전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의 이전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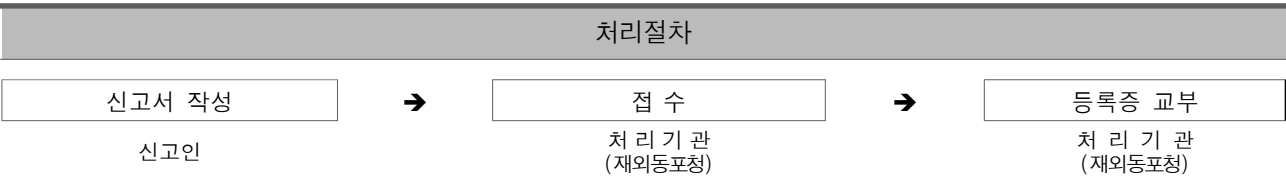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없 음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사항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 설치
[] 폐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설치(폐쇄) 예정 분사무소	소재지			
	명칭			
	영업개시일(폐쇄일)	년	월	일
	분사무소 대표자명			
	설치(폐쇄) 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의 ([] 설치, [] 폐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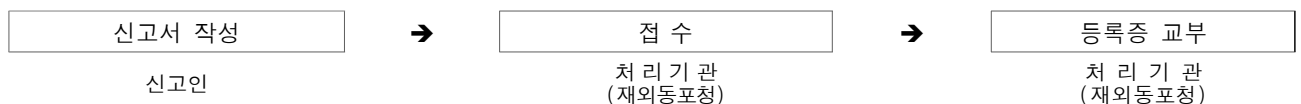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분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처리절차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기등록자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호	전화번호		
	주소			
업소 소재지				
양 도 일		년	월	일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				
양도 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등록증 교부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피 합병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합병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합병일		년	월 일
합병 후 사용할 상호			
합병 후 주소			
합병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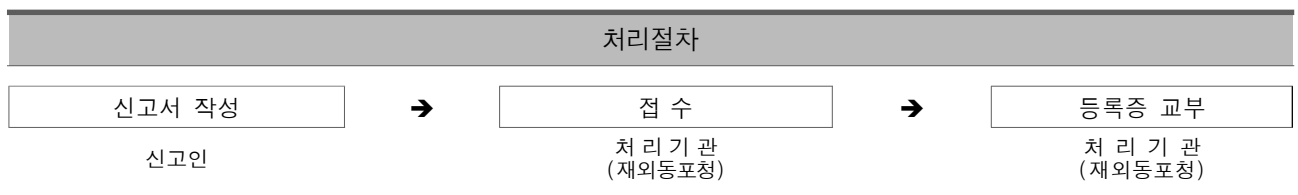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합병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피합병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주번호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여권번호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 신고자명				포기 사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비 고	

「해외이주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 포기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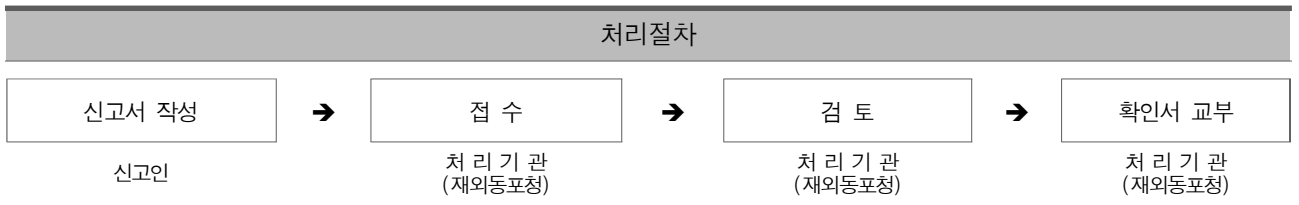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여권(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2.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수수료 없 음
------	--	------------



영주귀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주번호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여권번호			
영주귀국사유		동반 가족 중 동시 신고자명			
국외생활부적응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여권번호
노 령					
질병치료					
국내취업					
국내취학					
이 혼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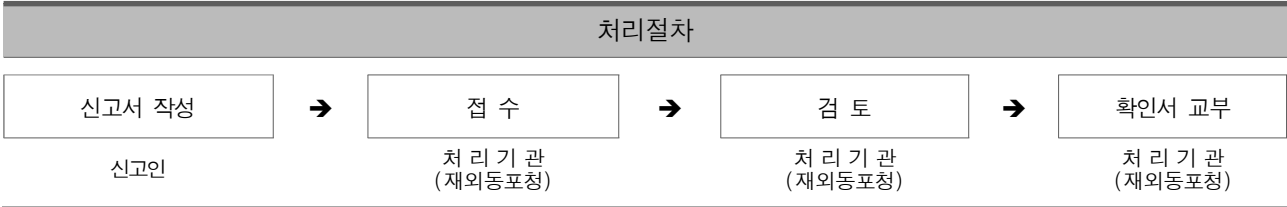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여권(단,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함께 지참) 2.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	--	------------



영주귀국 확인서

확인번호	확인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번호		여권발급일	
이주국		여권번호	
동반자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의 영주귀국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 외 동 포 청 장 직 인

유의사항

이 신고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한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복사본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동의서

신고인 ※ 미성년자인 해외이주자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주 국가	
동의 구분	☐ 해외이주신고 신청(「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대한 동의	
법정대리인 1 ※ 신고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부 · 모 · 기타 후견인()	
법정대리인 2 ※ 신고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부 · 모 · 기타 후견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들)은 신고인의 _____로서 위의 해외이주신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동포청장 귀하

유의사항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략) 2. 미성년자가 <u>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u> 3. 4. (생략) <u><신설></u>	<u><삭제></u>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해외이주</u>----- ----- <u>법정</u> <u>대리인(부모 또는 -----</u> ----- <u>동의서 및 법정</u> <u>대리인의 신분증 사본</u> 3. 4. (현행과 같음) 5. <u>이주대상국가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외국인 또는 외</u>

<신 설>

<신 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
민국 국민) 여권 사본(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

6. 법 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
고를 한 후 이전 해외이주국
가와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이
주를 재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영주귀국신고 당시 취소를 확
인한 제1호에서 정한 영주권
등 서류를 재취득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7. 여권 및 여권으로 주민등록
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

② -----

----- 2호부터 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1호와 6호의 서류에 대한 행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 4. (생략)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생략)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정정보 ---. ---.

1. ~ 3. (현행과 같음)

4. 관세납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국세납세증명서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의 해외이주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 이상 3년 이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제11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포기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과 여권(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정보 증명서)를 말한다.

② (생략)

제13조(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
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
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주귀국) ① -----

----- 서류 등과 여권(여권으
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 또는 여권
정보 증명서)을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
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
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 1
부(사업장 이전의 경우)

2. 분사무소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분사무소 설치의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
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

<u>제14조</u> (생략) <u>제15조</u>(서식) 법 및 영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14. (생략) <u><신설></u>	<u>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u> <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u>제16조</u>(서식)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u>
--	---